



교육감규정

부문: 학생

번호: **A-432**

주제: 수색 및 압수

페이지: 1 중 1

발행: 2005/9/3

변경 내용 요약

본 규정은 2000년 9월 5일자 A-432를 대체한다. 본 규정은 학생의 개별적 수색 또는 금속 탐지기 검사 시행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수립한다.

변경 내용:

- 연락처 정보 갱신



교육감규정

부문: 학생

번호: A-432

주제: 수색 및 압수

페이지: 7 중 1

발행: 2005/9/3

개요

본 규정은 2000년 9월 5일자 교육감 규정 A-432를 대체한다. 학생은 부당한 수색과 압수를 거부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가 있다. 학교 관리가 학생이 법 및 학교 규정과 규칙을 위반했거나 위반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확신하는 경우, 학생의 신체와 소지품을 수색할 수 있습니다. 수색의 정도와 범위는 목적에 맞게 타당해야 하며 학생의 연령, 성별 및 위반의 성격에 따라 과도하게 방해해서는 안 된다. 수색은 학생의 프라이버시와 존엄성에 대한 배려를 하여 실시해야 한다. 다음은 학생, 학생의 소지품 및 라커 수색시 따라야 하는 절차이다.

I. 수색

학생의 수색, 금속 탐지기를 사용한 수색, 소지품 및 라커 수색은 학교장/피지명인을 대신하여 학교 안전요원 (School Safety Agent: SSA)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A. 학생 및 소지품 수색 (예: 책가방, 옷)

1. 학생이 법이나 학교 규정 및 규칙을 위반했거나 위반하고 있다는 의심이 가는 경우, 교장/피지명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수색이 허락된 경우 교장/피지명자는 SSA에게 교장/피지명자가 지정한 장소로 학생을 데려가도록 지시해야 한다. 비상 사태일 경우에는 제 1.A.7항을 참조한다.
2. 학생이 지정된 장소에 오면 교장/피지명자는 해당 학생이 법이나 학교 규정 및 규칙을 위반했거나 또는 위반하고 있다는 근거가 있다고 학생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3. 교장/피지명자는 아래의 제 1.A.7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학생의 수색이 실시될 때 현장에 있어야 한다.
4. 수색을 하기 전에 교장/피지명자는 해당 학생에게 학교에서 금지된 소지품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아야 한다. 학생이 금지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할 경우, 교장/피지명자는 해당 물품을 신체나 소지품 중에서 꺼내도록 지시해야 한다.



교육감규정

부문: 학생

번호: A-432

주제: 수색 및 압수

페이지: 7 중 2

발행: 2005/9/3

5. 학생이 해당 품목을 꺼내 놓으려고 하지 않거나 아무런 금지품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대답하는 경우, 교장은 SSA에게 학생을 수색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학생의 신체를 수색하는 경우, 가능한 동성의 SSA가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6. 수색을 하는 SSA가 법이나 학교 규정 및 규칙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될 물품을 찾은 경우, SSA는 학생에게 해당 물품을 꺼내도록 지시한다. 학생이 이를 거부하면 SSA는 물품을 강제 압수할 수 있다.
7. 학교나 개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즉각적인 중재가 필요한 긴급 상황의 경우, SSA는 학생에게 법이나 학교 규정 및 규칙을 위반했거나 위반하고 있다는 혐의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학생을 수색할 수 있다. 긴급 상황을 처리한 다음 SSA는 해당 학생을 교장/피지명자에게 데려가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8.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을 알몸상태로 수색할 수 없다.

B. 라커 검색

1. 학교 라커는 학생들에게 배정되지만 교육청의 소유물이다. 학생이 법이나 학교 규정 및 규칙을 위반했거나 위반하고 있다는 증거가 라커 안에 있다는 의심이 갈 경우, 라커를 수색할 수 있다.
2. 학생의 라커에 금지 물품이 들어있다고 의심 되는 경우, 교장/피지명자에게 알려야 한다. 교장/피지명자가 수색을 허락한 경우, SSA 또는 담당자에게 라커 수색을 하도록 해야 한다.
3. 교장/피지명자는 아래의 제 II.B.4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라커 수색을 실시할 때 현장에 있어야 한다.
4. 학교 또는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즉각적인 중재를 해야 하는 경우, SSA는 학생이 법이나 학교 규정 및 규칙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라커에 있다는 의심이 가는 경우, 학생의 라커를 수색할 수 있다. 사태가 수습되면 SSA는 즉시 교장/피지명자에게 알려야 한다.

II. 금속 탐지기 검색

A. 개요



교육감규정

부문: 학생

번호: A-432

주제: 수색 및 압수

페이지: 7 중 3

발행: 2005/9/3

1. 금속 탐지기 검색의 목적은 무기류 및 금지 물품이 학교에 반입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다. 검색의 정도와 성격은 교직원이 자신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데 필요한 정도를 넘어설 수 없다.
2. 교장/피지명자는 현장에서 학생 검색을 참관하여야 한다. 한 곳 이상의 검색 장소가 있는 경우, 피지명자는 교장의 지휘하에 장소를 배정받아 검색 절차와 후속 조치가 올바르게 이행되도록 감독해야 한다.
3. 학생이 검색을 거부할 경우, 교장/피지명자에게 보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협조를 거부하는 학생의 등교를 불허하거나 가정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다.
4. 임신한 학생 또는 의학적 이유로 검색을 할 수 없는 학생이 금속 탐지기 검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학생을 교장실로 보낸다. 다음 절차는 교장이 SSA에게 알려 준다.
5. 특정 학생이 무기류 또는 기타 금지 물품을 소지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아래에 언급된 절차 중 어떤 것에도 학생 또는 학생의 소지품을 수색할 교장 또는 피지명인과 SSA의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

B. 휴대용 탐지기의 사용

1. 학교에 등교하는 모든 학생을 검사한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 교장은 전교생 모두를 수색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교장은 SSA 책임자와 의논하여 임의로 수색할 학생수를 결정한다.
2. 어떠한 경우에도 학교 임직원 또는 SSA는 특정 학생이 무기류 및 금지 물품을 소지했다는 충분한 근거 없이 학생을 수색하도록 할 수 없다.
3. 수색 대상 학생 수에 대한 변경 사항, 정해진 수에 대한 예외는 교장/피지명자가 기록해야 한다. 기록 입력에는 변경 또는 예외를 허락한 사람을 날짜, 시간, 변경 이유와 함께 표시해야 한다.
4. 무기 검사는 학생이 학교 건물에 들어올 때 가능한한 동성의 SSA가 실시하도록 한다.
5. 초기 검사 시 SSA 또는 검사 기기가 학생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육감규정

부문: 학생

번호: A-432

주제: 수색 및 압수

페이지: 7 중 4

발행: 2005/9/3

6. 검사를 실시하는 SSA는 검사할 학생에게 인사를 한 다음 절차를 설명하고 질문에 답변하며 적절한 지시 사항을 알려준다.
7. 검사를 하기 전에 SSA는 학생에게 금속 물질을 주머니에서 꺼내 쟁반에 놓도록 지시한다. 쟁반은 모두가 보이는 장소에 보관하며 소지품은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돌려준다.
8. SSA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검사를 진행한다.
 - a. SSA는 검사할 학생의 오른쪽에 선다. 검사는 오른쪽 어깨 부분에서 시작하여 아래로 왼쪽 발까지 한다.
 - b. 학생의 뒤편으로 이동하여 발에서 머리쪽으로 신체의 오른쪽을 검사한다.
 - c. 학생의 머리에서 다리쪽까지 등을 검사한다.
 - d.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다리에서 머리쪽을 향해 머리를 넘어 등쪽으로 검사한다.
 - e. 학생의 신체 왼쪽 부분을 가슴에서 다리 방향으로 검사한다.
 - f. 모든 소지품과 가방을 손으로 직접 수색하거나 엑스레이 패키지 스캐너를 사용해 검사한다.

C. 금속 탐지기의 작동에 대한 반응

1. 엑스레이 패키지 스캐너에 수상한 물체가 보이거나 가방 또는 소지품을 검사할 때 휴대용 스캐너가 작동하면 해당 학생에게 통보한다. 필요한 경우 SSA는 가방 또는 소지품의 표면을 손으로 만져서 검사할 수 있다. 가방 또는 소지품에 금지 물품이 있다는 의심이 가는 경우 SSA는 가방 또는 소지품을 열 수 있으며 SSA가 학생에게 가방 또는 소지품을 열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그 다음 SSA는 금지 물품이 있는지 확인한다.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가방 또는 소지품을 움직여야 하는 경우 SSA는 도웰 스틱 (dowel stick) 을 사용할 수 있다.
2. 휴대용 금속 탐지기의 알람이 작동하는데 근원지를 알 수 없을 때 (예: 보석류 등), 검사를 하는 SSA는 신체에 부착된 금속 물체를 모두 꺼내도록 지시하고 두 번째 검사를 할 수 있다. 그래도 탐지기가 작동하면 교장/피지명자는 SSA에게 학생을 별도의 장소에 데려가 다음에 설명된 절차에 따라 수색 작업을 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교육감규정

부문: 학생

번호: A-432

주제: 수색 및 압수

페이지: 7 중 5

발행: 2005/9/3

D. 수색 절차

1. 수색은 교장/피지명자가 참석하여 지켜보는 장소에서 실시해야 한다.
2. 수색을 하기 전에 교장/피지명자는 다시 한번 학생의 몸에 지닌 금속 물질을 꺼내도록 요청한다. 학생이 이를 거부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색을 한다.
3. 수색은 금속 탐지기가 작동한 신체 부위에만 실시한다. 수색은 금속 탐지기 장치를 작동시킨 물체를 찾을 목적에 한하여 학생 주머니, 벨트, 어깨, 기타 부위 주변에 있는 옷의 외부를 가볍게 두드려야 한다.
4. SSA가 금속 탐지기 장치를 작동시켰을 가능성이 있는 물체를 만져서 검사할 때 해당 물체가 금지 물품이라고 생각되면 압수해야 한다. 또는 SSA가 학생에게 해당 물체를 꺼내도록 요청한다. 만약 학생이 이를 거부할 경우 SSA는 물체를 압수해야 한다.
5. 금속 탐지기를 작동시켰을 가능성이 있는 물체를 학생이 자진해서 제출하고 이 물체로 인해 금속 탐지기가 작동되었다면 SSA는 수색을 중지해야 한다. SSA는 금속 탐지기가 다시 작동한 경우에만 학생을 다시 검사하고 수색을 계속할 수 있다.

E. 통과형 금속 탐지기

걸어서 통과하는 금속 탐지기의 경우 다음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1. I 단계: 1차 금속 탐지기 통과
2. SSA는 학생에게 주머니에서 금속물을 꺼내 학교 가방 또는 쟁반과 같이 지정된 위치에 놓아 두도록 요청한다.
 - a. 가방 또는 소지품은 “공항식” 엑스레이 기계로 검사한다. 가방 또는 소지품이 엑스레이 기계를 통과한 후 학생은 금속 탐지기를 걸어서 통과한다.
 - b. SSA는 각 학생이 통과용 금속 탐지기를 통과할 때마다 금속 레벨 표시기를 감시한다.
 - c. 레벨 표시기는 특정 시간에 금속 탐지기를 통과하는 학생이 얼마나 많은 금속을 지니고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기록을 한다.



교육감규정

부문: 학생

번호: **A-432**

주제: 수색 및 압수

페이지: 7 중 6

발행: 2005/9/3

d. 레벨 표시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녹색 - 약간의 금속
- 주황색 - 중간 정도의 금속
- 빨간색 - 많은 양의 금속

e. 학생이 허용량 이상의 금속을 소지한 경우 빨간색 알람 표시기 및 오디오 알람이 작동한다. 알람이 작동하면 학생은 추가 검색을 받아야 하며 2차로 금속 탐지기를 통과해야 한다. (II 단계)

3. II 단계: 2차 금속 탐지기 통과

학생에게 2차로 탐지기를 통과하도록 하기 전에 SSA는 학생에게 신체에 꺼내놓아야 할 금속 물질이 있는지 재확인을 요청하고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금속 소지품을 쟁반에 놓아두도록 한다.

- a. SSA는 금지품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금속 물질을 손으로 검사한다.
- b. “공항식” 엑스레이를 사용할 경우, SSA는 모든 학생이 학교 가방 또는 쟁반과 같은 지정된 위치에 금속 물질을 놓아두도록 지시하고 엑스레이를 사용하여 학교 가방의 내용물도 검사한다.
- c. 학생에게 빨간색 알람 표시기 및 오디오 알람이 작동하는 경우, 위의 II.B 설명에 따라 학생을 휴대용 탐지기로 검사한다.

F. 금지 물품의 발견 (무기류, 마약류 등)

1. 학생이 불법 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있으면 경찰에 알린 후 해당 학생을 체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교육감 규정 A-412 참조)
2. 경찰이 학생을 불법 금지 물품 소지를 이유로 체포하거나 학교 내에서 불법 금지 물품이 발견된 경우, 경찰이 색출한 물품을 보관 및 증거 서류를 작성한다.
3. 학교 담당자는 NYPD 증거 서류의 사본을 요청한다. (증거물 보관서)
4. 경찰이 학교 내에서 발견한 금지 물품을 보관하지 않는 경우 다음 절차를 밟는다.



교육감규정

부문: 학생

번호: **A-432**

주제: 수색 및 압수

페이지: 7 중 7

발행: 2005/9/3

- a. 교장/피지명자는 교육청 증거 양식과 봉투를 사용하여 물품을 명시해야 하며 필요한 모든 정보를 기입해야 한다.
- b. 교장/피지명자는 교육청의 학생 안전 및 예방 서비스 담당실(Division of Student Safety and Prevention Services: DSS&PS)에 즉시 알려 NYPD의 학교 안전 부서가 금지 물품을 가져가도록 준비해야 한다. 무기류는 NYPD의 학교 안전 부서에게 양도하여 운반할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 c. 금지 물품을 가져가기 위해 NYPD가 도착하면 교장/피지명자는 밀봉된 봉투에 넣은 금지 물품과 증서를 양도한다.
- d. 학교가 금지 물품을 교육구장의 심의에서 증거로 사용하려 하는 경우, 교장/피지명자는 DSS&PS에게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III. 소지품의 반환

학생이 내놓은 모든 소지품이 교육감 규정에 의해 금지되거나 범죄 행위의 증거가 되지 않는 경우, 검색이 끝나는 대로 학생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IV. 의문사항

본 규정에 대한 의문사항은 다음의 학교 중재 및 개발실로 문의한다.

| | | |
|--------------------|--|--------------------|
| 전화 212-374-5090 | 학교 중재 및 개발실 NYC Department of Education 52 Chambers Street New York, NY 10007 | 팩스 212-374-5598 |
|--------------------|--|--------------------|